

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증권모투자신탁(미달러)[주식-재간접형]

2. 변경 사유:

- 투자대상자산 추가(통화관련파생상품)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5 년 08 월 08 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신탁계약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<생략> 1~3.<생략> <추가> 4.~7.<생략>	①<생략, 현행과 같음> 1~3.<생략, 현행과 같음> 4. 투자활동,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대량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현금흐름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(이하“통화관련파생상품” 이라 한다) 5.~8.<조항 순연, 생략, 현행과 같음>
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<생략> 1~3.<생략> <추가> 4.~7.<생략>	<생략, 현행과 같음> 1~3.<생략, 현행과 같음> 4. 통화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5.~8.<조항 순연, 생략, 현행과 같음>
제17조(운용 및 투자제한)	<생략> 1.~4.<생략> <추가>	<생략, 현행과 같음> 1.~4.<생략, 현행과 같음> 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.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.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

		<u>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u>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<p>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생략></p> <p>1.~4.<생략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6조제4호</u> 내지 <u>제7호</u>, <u>제17조제2호</u> 및 <u>제4호</u>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~5.<생략></p> <p>③ 제17조제2호 본문, 제17조제4호가목 및 나목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<u>제4호</u>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생략, 현행과 같음></p> <p>1.~4.<생략, 현행과 같음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<u>제4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6조제5호</u> 내지 <u>제8호</u>, <u>제17조제2호</u> 및 <u>제4호</u> 내지 <u>제8호</u>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~5.<생략, 현행과 같음></p> <p>③ 제17조제2호 본문, 제17조제4호가목 및 나목, <u>제5호</u> 내지 <u>제7호</u>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